

수 신 편집국장 · 보도국장  
참 조 미디어 담당 기자  
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 편집권 독립 등 올바른 언론 발전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편집권 강화와 이를 통한 올바른 언론 진흥과 신문 발전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018년 11월 28일 전국신문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신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언론 진흥과 신문 발전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학계의 도움을 받아 신문법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4. 올해 신문의 날을 앞둔 4월 4일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노동자 선언을 한데 이어 9월 말에는 1313명의 신문 노동자들의 서명이 담긴 개정안 촉구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5. 아울러 편집권 독립, 올바른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신문 지원에 대한 ‘신문법’ 명시, 위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지역 언론 의무 게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6.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심도깊은 논의 끝에 ‘신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정비 후 발의하게 되었으며,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7. 편집권 독립을 통해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되살리고 이를 실천하는 올바른 신문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신문법’ 일부법률개정안,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신문 유통과 플랫폼 다변화 속에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공론장의 바른 역할 구현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참고1] ‘신문법’ 개정을 위한 언론노조 활동 경과

[참고2] 언론노조 제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참고 1]

신문법 개정을 위한 언론노조 활동 경과

- 
- ① 신문법 개정을 위한 언론노조 정책토론회 - 편집권 독립과 신문 진흥  
- 2018년 11월 28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 ② 2019년 2월 전신노협 워크숍 개최 신문 관련 3법 개정 방향 등 논의

---

  - ③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 을 위한 노동자 선언  
- 4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④ 5월 23일 네이버 지역 신문 차별 항의 집회 및 기자회견

---

  - ⑤ 7월 1일 ~ 10월 2일 네이버 앞 매주 월요일 1인 시위

---

  - ⑥ 7월 18일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면담

---

  - ⑦ 8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에 신문법 개정안 안내 및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 ⑧ 9월 9일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신문노동자 1차 서명 운동 시작  
- 9~10월 이상호 의원, 조훈현 의원 등 문체위 소속 의원 면담 및 신문법 개정안 취지 설명

---

  - ⑨ 9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 9개 일간지에 1313명 서명 참가자 명단 공개하는 광고 게재

---

  - ⑩ 신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 ⑪ 10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1만 5000여 조합원 대상 신문법 개정 촉구 2차 서명 운동 돌입

---

  - ⑫ 10월 28일 이상호 의원 대표발의로 신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언론노조 참석자: 오정훈 위원장, 송현준 수석부위원장, 한대광 전신노협의장, 장형우 서신노협의장, 전대식 지신노협의장 등)
-

[참고 2]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지 및 주요 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됨.

최근 블로그, 개인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보의 홍수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으로서 국민의 복리 증진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마.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3 신설).

사.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언론진흥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6조).